

#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MOU)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와 팔공신협은 혁신적인 협동조합금융 인재 양성과 부동산·지적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혁신적인 협동조합금융 인재 양성과 부동산·지적학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내용】** 양 기관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1.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와 “팔공신협”은 협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취창업 특강, 현장실습, 기업설명회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양 기관의 인적자원 및 교육공간을 상호 활용한다.
2.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는 협동조합금융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동조합금융트랙을 개설하고, 관련 전공교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3. “팔공신협”은 협동조합금융트랙을 이수중인 인재의 학업의욕 고취 목적의 장학생 선발에 협력한다.
4. “팔공신협”은 협동조합금융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기제 현장실습기관으로 참여에 협력한다.

**제3조 【협약원칙】**

1.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양 기관의 실무부서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협약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 【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일방 기관이 서면 해지 요청이 있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5조 【신의성실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2. 양 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효력발생 및 기타】**

1.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본 협약은 제4조와 제5조를 제외하고는 법적효력이 없으며 양 기관 간에 추가적인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계약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와 “팔공신협” 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28일



**대구대학교**  
DAEGU UNIVERSITY



**팔공신협**

부동산지적학과장 **양 성 철**

이사장 **전 영 호**

양 성 철

전 영 호